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이상원 의원 외 12인

나. 회부일자: 2024. 11. 18.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11.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교섭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향후 필요시 반영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4. 11. 6 ~ 2024. 11. 12. (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교섭단체”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내 정파적 단체임. 본래 국회만의 고유권한이었으나, 「지방자치법」이 2023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되어 마포구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정수를 정하고 대표의원 선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섭단체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등으로 본칙 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 정의는 “교섭단체”를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내 정당 및 정치단체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마포구의 선거구를 고려한 6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6인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하고 대표의원의 선임 근거와 교섭단체 명칭변경, 의원의 당적변경 등에 대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 교섭단체 기능은 정당 정책의 추진과 교섭단체간 교류·협력·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교섭단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범위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파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당 간 이해와 협의 조정을 위한 협의 기구로서 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임.
- 「지방자치법」이 2023년 3월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일정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였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중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정당정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 제정 조례안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마포구 선거구제를 고려하여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6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섭대표도 선임하도록 하였음.
- 이에 마포구의회도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소속 의원들의 행동을 통일하고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등 정책 조정과 효율적 운영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의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소수 의견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지원 또한 비효율적으로 사용시 소속 정당의 우선 과제에 치우쳐 공익보다는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감독이 부족할 경우 부적절한 지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책 효율성과 대표성 사이에서의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법」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와 “양심에 따라” 라는 규정으로 외부적 구속을 받지 않고 정당기속에 의해 외부적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양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같은 지위로 본다면 교섭단체는 개별의원의 자유위임을 침해하는 제도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직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 타 : 없 음